

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 양식

2019년 7월 15일 / 방콕지사

구 분(택1)	핵심내용
(라벨링)	<input type="checkbox"/> 밀폐 병 용기 음료 라벨링 규정 수정

주요내용 및 시사점 · 대처방안
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태국 보건부(Ministry of Public Health)는 2013년 6월 26일 공지한 밀폐 병 용기에 담은 음료에 관한 규정 No.356 내용의 일부분을 취소 및 추가하여 2019년 5월 7일 관보 공지하였고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No.356의 제 8조 마지막 구절의 “음료에 감미료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‘감미료로 ... 을 사용’이라고 표기하고 글자 크기는 2mm 이상, 글자 색상은 라벨 색상과 대비되어야 한다.”를 삭제한다.다음과 같은 내용을 No.356의 제 9조 2항으로 추가하여 시인성을 높인다. “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카페인 함유 음료는 ‘수면 장애나 심한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...(캔, 병 등과 같은 포장단위 기입)이상 섭취하지 마시고 어린이나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세요. 또한 질병을 앓고 계시거나 환자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.’와 같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. 굵은 빨간 글자로 크기는 2mm 이상이어야 하며 하얀 배경색에 테두리는 라벨과 대비되는 색으로 사각형 글상자 안에 기입해야 한다.”본 공지가 관보로 발표되기 전에 라벨링 처리가 된 카페인 함유 음료의 경우 계속 유통이 가능하나 관보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안인 2021년 5월 8일까지 공지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.태국어 번역본 참조
<input type="checkbox"/> 시사점 및 대처방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식품 경고 문구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는 곳에 표기하는 것이 좋다. 앞으로 카페인 음료 외에도 주류, 건강식품 등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의 라벨링은 규정이 더 강화될 수도 있으니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.
<input type="checkbox"/> 발표일자/출처 : 2019년 4월 25일 / 태국 보건부

관보 공지 เล่ม ๑๓๖ ตอนพิเศษ ๑๑๓ ง, 2019년 5월 7일

태국 보건부 공지
No.402(2019년)
밀폐 병 용기 음료

태국 보건부는 밀폐 병 용기에 담은 음료에 관한 공지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1978년에 제정한 식품 법률 제 5조 및 제 6조(3), (4), (6), (7), (10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한다.

제 1조 취소

2013년 6월 26일에 공지된 No.356의 밀폐 병 용기에 담은 음료에 관한 공지 제 8조의 마지막 구절

제 2조 추가

아래의 내용을 No.356의 밀폐 병 용기에 담은 음료에 관한 공지의 제 9조 2항으로 추가한다.

“제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카페인 함유 음료는 ‘수면 장애나 심한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...(캔, 병 등과 같은 포장단위 기입)이상 섭취하지 마시고 어린이나 임산부는 섭취하지 마세요. 또한 질병을 앓고 계시거나 환자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.’와 같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. 글꼴은 굵은 빨간 글로 높이는 2mm 이상 하얀 배경색에 테두리는 라벨과 대비되는 색으로 사각형 글상자 안에 기입해야 한다.”

제 3조 본 공지가 관보로 발표되기 전에 라벨링 처리가 된 카페인 함유 음료의 경우 유통이 가능하나 관보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공지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.

제 4조 본 규정은 관보 공지를 시점으로 다음날 시행된다.

보건부 공지 2019년 4월 25일
Mr. Pradit Sinthawanarong
Minister of Public Health